

## ‘과거사’의 상흔 치유와 효과에 대한 성찰

정호기

성공회대민주주의연구소

〈논문요약〉

‘과거사’의 상흔 치유를 위한 제도가 실행된 이래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 그렇지만 그 방법의 적절성과 효과에 대한 논의는 빈약하다. 이 글은 과거사의 상흔에 대한 사회적 치유의 일환인 국가가 주체가 된 청산작업이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가를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 글에서 관심 있게 보려는 것은 과거청산 모델의 형성과 치유 방법의 구성, 제도적 상흔 치유의 실효성과 한계, 그리고 상흔 치유에 대한 사회의 반향 등이다.

과거사의 상흔 치유를 위한 제도는 ‘5·18 모델’, ‘민주화 모델’ 그리고 ‘민간인 희생 모델’로 유형화할 수 있다. 이들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후속 모델들의 성격과 청산작업의 수준은 점점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제도의 치유를 위한 구체적 조치들은 거의 무시되고 있었고, 사법부의 판결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다. 상흔 치유의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피해의 배·보상은 사실상 담보 상태였다. 과거사의 상흔 치유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향도 미비했다. 이와 같은 현상들로 인해 시민사회에서 과거사의 상흔 치유를 위한 새로운 주체를 구성하고 대안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크게 요구되고 있다.

■주요어: 과거사, 과거청산, 상흔 치유, 사회적 치유, 명예회복, 배·보상

## 1. 머리말

20세기 중반 이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과거청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과거청산의 주요 대상은 전쟁과 식민지, 그리고 독재시기에 발생한 반인륜적 범죄와 죽음, 인권 침해 등에 관한 것이었다. 과거청산을 실행한 국가들은 역사적·사회 구조적 조건과 환경들이 달랐다. 이로 인해 다양한 청산작업의 방식들이 등장했다. 이를테면, 유럽의 일부 국가들에서는 높은 강도의 과거청산이라고 할 수 있는 ‘처벌’과 ‘숙청’이 재판을 걸쳐 단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타국으로부터의 해방과 독재로부터의 자유가 가져온 분위기로 인해 사건의 배경과 맥락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이분법적 잣대가 적용되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반면에, 무수한 사람들이 학살 또는 실종되었고 반인권적 범죄들이 빈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실위원회가 해산되었던 볼리비아와 에콰도르의 사례들도 있다(Rigby 2007, 29; Hayner 2008, 107-108). 국가별 과거청산의 양상들은 위의 사례들보다 더 극단화된 사례들을 보여주기도 하며, 양극 사이에는 다양한 과거청산의 형태들이 존재했다.

과거청산의 수준과 형태는 다양했으나, 이를 통해 도달하려는 공통의 목적은 과거사로 인한 상흔을 치유하고, 유사 사건들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었다(김동춘 2005; 한홍구 2009). 과거사의 해묵은 갈등과 대립이 지속되는 사회는 기존의 지배 집단과 세력의 독점이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사회는 불신과 반목 그리고 분열이 만성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다. 과거사의 고통이 완화되지 않고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사회는 구성원들에게 긍정적 정체성을 가질 것을 아무리 요구해도 공허한 메아리이고, 사회적 연대의식은 쉽게 균열되어 해체로 나아갈 것이다.

과거사의 상흔에 대한 태도는 은폐 혹은 억압, 회피의 방법이 지배적이었다. 그렇지만, 상흔에 대한 치유는 생체기가 생긴 직후부터 시작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치유 방법은 개인과 가족이 고통을 인내하거나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감수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치유의 목적과 효과의 측면에서 보면, 상흔의 방치 혹은 잠복이거나 심화에 다름 아니다. 과거사의 상흔이 원상태로 신속히 복원되기 위해서는 개인, 집단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동시에 치유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는 정치적 이념과 갈등,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해 어긋나곤 한다.<sup>1)</sup> 따라서 과거사의 상흔에 대한 치유의 주체와 체계는 정치 및 사회관계의 변화 속에서 의미와 방법을 재설정해야 했고, 민주화와 더불어 개인에서 집단으로 그리고 집단에서 국가 차원으로 확장되었다. 국가가 주체가 된 상흔의 치유가 개인 또는 집단 주체의 상흔 치유보다 반드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없고, 그것으로 국가가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사회 전반에 보다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지향되었다. 국가 주체의 과거청산은 개인과 집단 차원의 상흔 치유 요구를 수용해 제도한 것이므로, 개인과 집단 차원에서의 상흔 치유를 위한 활동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런데 개인과 집단 차원의 상흔 치유는 훨씬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며, 그 효과를 평가하기 쉽지 않다.

과거사의 상흔 치유에 있어서 국가가 주체가 된 과거청산은 일부라고 할 수 있으나, 사회적 파급 효과는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이 그간의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진 과거청산과 효과를 성찰하게 하는 이유이다. 과거청산에도 불구하고 상흔이 치유되지 않는다면, 추진 주체의 재편과 방법의 수정 그리고 효과의 점검이 순환적 사이클을 이루어야 한다. 그동안의 과거청산에 관한 연구들은 세 가지 주제에 집중되어 있었다. 즉 과거청산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주장하는 연구들, 과거청산의 대상이 되는 사건

---

1) 과거청산은 넓은 의미의 찬성론과 반대론의 각축장이다. 반대론의 주요 논거는 ①국론 분열론, ②경제 문제 우선론, ③과거에서 탈피론, ④공정성과 형평성의 의문 제기, ⑤공법자론, ⑥정치적 이용 가능성 등이었다(이용우 2008, 5). 이 글은 과거청산의 당위성과 부당성을 두고 공방이 치열하며, 사회관계의 구도에 따라 과거청산 작업의 대상과 방법, 그리고 수준과 목표가 달라진다는 인식에 의거한다.

들을 발굴하고 실체를 규명하는 연구들, 그리고 청산 작업의 진행과정과 성과에 관한 연구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과거사의 상흔 치유와 그 효과에 관한 이 연구는 세 번째 연구 주제의 문제의식을 성찰하고, 관심을 확장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주제는 실천적으로도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하고 있다. 과거사의 상흔 치유가 어렵다는 점은 한국현대사의 대표적인 국가폭력에 의한 사건이었던 5·18민중항쟁(이하 5·18)의 피해 치유와 결과가 잘 보여준다. 5·18이 발발한지 20주년이 되던 해이며, 국가 차원의 다양한 치유 작업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진지 10년이 되던 해에 출간되었던 『치유되지 않은 5월』이 대표적인 사례이다(변주나·박원순 편 2000). 5·18의 상흔 치유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은 이후 발간되었던 피해자들의 구술, 증언, 연구 등에서도 확인된다(최정기 2006). 과거청산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들이 대부분 실행되었던 5·18은 상흔 치유의 근본을 이루는 그 무엇을 해소하지 못한 상태로 오늘에 이른 것이다.

5·18의 사례가 이러하다면, 다른 과거사들의 청산작업은 훨씬 낮은 수준일 개연성이 높다. 왜냐하면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에서 이루어졌던 또는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과거청산 작업은 5·18의 청산작업을 교본으로 또는 타산지석으로 삼았고, 변환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자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이영재 2004, 257). 유사한 평가와 고민은 과거청산 작업을 수행한 다른 국가들에서도 공통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과거청산 성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들의 고찰이 필요하다. 세계 여러 국가들의 진실위원회 활동을 다룬 한 연구는 그 이유들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했다(Hayner 2008, 35-36). 첫째, 과거청산을 담당하는 조직이 달성할 수 있는 수준에 비해 피해자들과 시민 사회의 기대가 과잉되어 있다는 것이다. 둘째, 조사 작업에 필요한 노하우와 선행된 그리고 기 밝혀진 자료에서 획득할 수 있는 교훈이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아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진상 규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는 하지만, 과거청산 작업 일반으로 확장 적용해도 틀리지 않다.

과거청산에서 가장 중요하며 우선되는 작업은 진상 규명이다. 이에 근거하여 다른 과제들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명예회복이나 보상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경우에도, 충분하지는 않으나 나름의 진상 또는 사실 규명을 선행한다. 법률명에는 진상 규명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일부 과거사 기구들이 진상 규명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sup>2)</sup> 그러나 진상을 규명하고, 이를 보고서로 발간하며, 언론에 홍보하는 것이 상흔의 치유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것일까? 규명된 진상이 사회 전반에 스며들어 상흔 치유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과거청산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근래에 과거사와 과거청산을 주제로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들은 우려가 기우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 글은 과거사의 상흔에 대한 사회적 치유(social healing)<sup>3)</sup>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 차원의 청산작업이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과거청산의 제도화 과정과 구조의 형성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국가가 주체가 된 과거청산의 제도가 어떤 배경과 조건들의 차이에 의해 몇 가지로 유형화되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과거사의 상흔 치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명예회복의 실효성과 배·보상을 둘러싼 쟁점 및 현 실태를 고찰할 것이다. 끝으로 과거청산의 성과에 대한 사회의 반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과거청산을 분석 대상으로

---

2) 이를테면, 한국전쟁 전후기에 발생한 거창사건, 노근리사건 관련 기구들은 진상 보고서를 발간했다. 반면 한국전쟁 이후의 시기를 대상으로 하는 과거사 기구들은 진상 규명이 법률에 명시되지 않을 경우 보고서를 발간하지 않았다.

3) 이 글에서 사회적 치유는 넓은 의미로 사용했다. 즉 국가와 사회라는 대당 구도가 아닌, 과거사의 치유를 위해 특정한 사회가 추진하는 모든 방법들로 정의했다. 그러므로 사회적 치유의 영역은 국가 또는 제도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치유와 비국가 또는 비제도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치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 않는다.<sup>4)</sup> 이 글의 연구 대상은 이른바 ‘국가 폭력(State Violence)에 의한 피해’로 제한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방 이후에 발생한 사건들로 한정하고, 분단체제로 생겨난 일부 사건들에 대해서는 논외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대상이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연구의 초점은 보다 근래에 진행되고 있는 과거청산 작업에 둘 것이다.

## 2. 과거청산 모델의 형성과 치유 방법의 구성

과거사의 피해를 치유하는 방법과 적절성에 관한 논의는 빈약하다. 이 문제는 복잡한 이해관계와 쟁점들을 안고 있어서 논의와 대안 제시가 어렵고 난해하다. 그래서 과거청산의 역사적 배경과 환경, 정치·사회의 구조 변화와 흐름 등에 대한 충분한 고찰이 요구되었다. 그간의 연구들이 밝힌 것처럼, 한국에서의 과거청산 대상의 선정과 실현은 지속적인 것이 아니라 완급을 띠면서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과거청산이 현실화되는 순서는 사건이 발생한 시점 및 규모 등과 상응하지 않았다. 민주화의 진척 정도, 정치·사회 구조의 재편, 피해자들의 요구와 과거청산운동의 수준 등이 다양한 과거청산 작업의 제도화에 영향을 주었다(정근식 2002).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과거청산은 몇 가지 유형들로 제도화되었다.

과거청산의 궤적은 개별 또는 집단화된 피해자들의 요구를 국가가 수용하여 제도적 장치를 구성하고 이를 실행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왔다. 모든 사례들의 특성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는 있지만, 국가가 주체가 된 과

---

4) 한국에서 진행 중인 과거청산의 대상은 시간적으로는 동학농민전쟁에서 근래의 사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며, 공간적으로는 한국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이 전개되고 전쟁 동원이 이루어졌던 곳의 사건들까지를 포괄하고 있다.

거청산의 모델들은 크게 세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여기에는 과거청산 운동의 특성과 선행하는 과거청산 모델의 존재 여부가 중요한 변수였다. 각 사건들이 지닌 발생적 특성과 공론화도 모델의 차별화에 영향을 미치지만, 위의 요인들에 비하면 영향이 적다고 판단된다.

첫째, 진상규명운동이 ‘비제도적 운동정치’<sup>5)</sup>와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었고, 상흔의 치유를 위한 방법과 절차를 개척한 경우이다. 이는 ‘5·18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5·18의 청산운동은 초기 국면에서는 ‘승인 투쟁’의 성격이 대세였으나, 민주화운동과 긴밀하게 결합하면서 신속하게 비제도적 운동정치로 전환했다. 사회구성원들은 다른 과거사들보다 5·18을 생생하게 기억했고, 다양한 실천들을 통해 반추하면서 공감대를 확장했다. 사회구성원들은 국가가 발표한 진상 조사 결과와 자신들이 직간접적 경험을 통해 인식하고 있는 국가 권력의 반인권적 행위 및 막대한 인명 피해 사이의 차이를 납득할 수 없었다. 따라서 5·18의 청산운동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점점 격화되었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다른 어떤 것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주장되었다. 바로 이러한 힘들이 국가로 하여금 상흔 치유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방법들을 수용하도록 압박했다.

5·18의 상흔 치유는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미답지를 간 것과 다름없었다. 다른 나라들의 유사 사례들이 탐색되었으나, ‘기념사업’의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 부수적으로 영향을 미쳤다.<sup>6)</sup> 다른 나라들에서의 과거사 치유 사례와 방법이 5·18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는 것은 어쩌면 가능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5·18의 치유 과정은 과거사의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방법의 구체화와 제도적 천착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5) 비제도적 운동정치의 정의에 대해서는 정해구·김태일(2007, 18-19) 참조.

6)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기념 또는 추모사업은 4·19혁명과 같이 국가폭력을 주제로 한 시설들의 영향도 있었으나, 이와 성격이 다른 보훈시설이나 기념시설의 영향도 크게 받았다.

5·18 모델은 사회의 민주화와 더불어 점점 확대되는 방식으로 재구성되었다. 이 모델이 구체화된 순서는 진상 조사(1988년) → 명예회복(1988년) → 보상(1990년 개시) → 기념사업(1993년 개시) → 책임자 처벌(1995년) → 유공자 예우(2002년)였다. 5·18을 매개로 한 저항공동체는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선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지만, 국가는 견해를 달리했다. 국가는 피해 보상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이전에, 법률에 근거해 추진하지는 않았으나 진상 조사와 명예회복이라는 절차를 밟았다고 파악했다.<sup>7)</sup> 보상 이전의 절차에 대한 인정 여부를 두고 인식의 차이가 컸다. 이것은 청문회와 책임자에 대한 사법적 처벌 등을 포함해 수차례에 걸쳐 진상을 재규명하도록 했던 원인이었다. 명예회복의 경우도 관련자들에 대한 재심 절차를 걸쳐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 아울러 충실하지 않은 진상 조사에 의거한 피해자 보상은 무수한 갈등과 논란을 유발시켰다. 그리하여 약 20여 년 동안 국가 보상이 이루어졌으나 미완료 상태이다. 물론 국가 보상의 완료가 곧 상흔에 대한 물질적 치유의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한 국가 유공자의 선별과 예우에 대해서도 매듭을 짓지 못한 상태이다.<sup>8)</sup>

5·18 모델은 국가 폭력의 제도적·사회적 치유에 필요한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유사 사

7) 5·18에 대한 공식적 진상 조사가 실시된 적이 있었는가, 있었다면 이를 인정할 수 있는가 여부가 쟁점이 된다. 정부는 “민주화합추진위원회”의 ‘광주문제 치유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토대하여 1988년 4월에 발표한 ‘광주사태치유대책’을 진상조사로 간주한다. 반면, 조희연은 1988년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작성한 「국정조사보고서」를 공식보고서로 판단하고 있다(조희연 2005, 63).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국가 차원의 조사는 이후에도 몇 차례 더 있었으나, 피해자 단체와 시민단체 등은 진정한 의미를 지닌 진실 규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8) 2009년 4월 16일 “5·18민주유공자의 보훈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발표 내용들은 대체로 보상법과 유공자법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었다. 이 쟁점들은 이전부터 논란이 되었던 것들이기는 하지만, 오늘날에서야 공론화하는 배경에 대해 천착을 필요로 한다.



건들의 재발을 예방하는 장치의 강구와 상흔의 치유에 필요한 정확한 요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중요한 쟁점 사안이었던 책임자 처벌도 정치 세력들 간의 타협으로 마무리하면서 후속 과거청산에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 이것은 다른 과거청산 작업에서 책임자 처벌이 의제화된다고 해도 5·18의 선례를 넘어서기 어려운 한계지점을 표시해 준 것이었다.

둘째, 비제도적 운동정치와 청원 투쟁을 병행한 과거청산운동이 이루어졌고, 5·18모델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민주화 모델’이다. 5·18 이외의 민주화운동들과 의문사를 필두로 한 인권 침해 사건들이 대부분 이에 해당된다. 이 모델은 책임자 처벌이라는 의제를 공식화하지 않았다. 진상 조사의 과정에서 가해자나 관련자들이 거론되기도 하고, 보고서에 명기되기도 했으나, 더 이상의 진척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다음 세 번째 모델과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지만,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집행했으며 주요 기념사업을 주관했다는 점에서 달랐다.

민주화 모델은 명예회복 및 보상과 진상 규명이 이원화되어 진행되었다. 명예회복과 보상은 「5·18민주화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5·18보상법)」을 근간으로 제정된 법률적 특성으로 인해 진상 규명이라는 과제는 부차적인 것이었다. 그리하여 일부 사건들에서는 명예회복과 보상이 결정된 뒤 다른 과거사 기구들에서 진상 조사를 하는 현상들이 발생했다.<sup>9)</sup> 청산의 초점은 사건이 아닌, 피해자 개개인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피해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었다.

진상규명은 의문사로 분류되었던 죽음들의 사인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이 조사에는 민간인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기관들의 비협조와 자료 부실,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들로 인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

9) 대표적인 예가 아랍화사건, 우리의 교육 지표사건, 사복사건 등이다.

지 못하고 해산했다(한겨레 2004.6.30).

셋째, 비제도적 운동정치에 비해 청원 운동의 방법이 우선시되었으며, 선행한 과거사 치유 모델들을 주시하면서 제도화가 이루어졌던 경우이다. 한국전쟁 전후기에 발생한 민간인 희생에 관한 사건들의 청산 작업의 제도화는 대체로 여기에 포함되기에 ‘민간인 희생 모델’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이 모델은 상흔 치유의 제도화와 ‘화해(reconciliation)’ 및 용서를 교환한 측면이 있었다.

이 모델을 고찰할 때 주목할 것은 ‘거창사건’이다.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거창사건 특별법)』은 가해자 처벌을 목적으로 한 5·18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하루 전인 1995년 12월 18일에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거창사건 특별법에는 책임자 처벌에 관한 규정은 물론 진상 규명과 보상에 관한 사안들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 법률은 사망자 및 유족의 결정과 명예회복 그리고 위령사업만을 과제로 했다.<sup>10)</sup>

진상 조사가 배제된 것은 한국전쟁 시기에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잘 알려진 것처럼 그 과정과 결과는 부실했다(거창사건관리사업소 2005). 그러므로 이 법률은 과거청산 작업의 제도화 수위를 크게 위축시킨 것과 다름이 없었고, 민간인 희생사건들의 치유 방법의 경계를 축소했다는 점에서 불안한 출발이었다.

국가폭력의 상흔을 치유하기 위한 제도적 모델들은 이렇게 생겨났다. 선행 모델은 후속 모델에 영향을 미쳤으며, 후속 모델들은 모방과 더불어 특별한 조건들을 고려해 차별화되어 갔다. 후속 사건들은 선행한 과거청산의 제도화 경로와 결과들을 주시하고, 반면교사로 삼아 자신들의 상황

---

10) 법률 제3조 2항은 거창사건위원회의 역할을 “1. 사망자 및 유족결정에 관한 사항, 2. 사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3. 묘지단장, 위령제례 및 위령탑 건립에 관한 사항”으로 정의하고 있다.

에 적용했다. 5·18 모델은 후속 과거청산 사건들이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연계시키려고 했던 선례였다. 그래서 책임자 처벌을 제외한 다른 청산 과제들이 모두 수용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5·18은 해주었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느냐'는 주장이 빈번하게 거론되었고, 김대중 정부 시기에 5·18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기념사업이 시작되었다는 낭설이 유포되기도 했다. 5·18의 제도적 해결의 결과가 특히 확실하게 영향을 미친 것은 기념사업이었다.

민간인 희생사건들은 5·18 모델을 목표로 한 제도화를 시도했으나, 청원 투쟁이 장기화되면서 거창사건의 치유방법에 수렴되어 갔다. 즉 민간인 희생사건들은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 그리고 위령사업이라는 사실상 거창사건 특별법에 근거하여 법률이 구성되었다. 민간인 희생사건들은 책임자 처벌이라는 효과가 가장 큰 치유 방법을 사용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었다. 무엇보다 책임자 처벌이라는 과제가 실행되었을 때, 이것이 가져다 줄 후과와 실효성에 대한 회의가 컸다. 자칫하면 진상 조사를 방해받을 수 있었고, 책임자의 다수는 이미 사망했거나 생존해 있다 해도 책임을 묻기가 불가능했다.<sup>11)</sup> 우려되었던 것은 책임자 처벌이 강조되면 화해를 위한 청산이라는 주장과 충돌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과거청산의 제도화를 성취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피해 보상도 우선 과제로 주장되지 않았던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책임자 처벌을 제외하면, 과거청산 작업에 있어서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제60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진상 규명, 사과, 배상 또는 보상, 명예회복' 등을 추진할 것이며, 국가기관의 반인권 범죄 시효배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 발언은 과거청산의 제도화와 제도의 강화를 갈망한 사람들을 고무

11) 이와 같은 난점들은 상대적으로 진상 규명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었던 의문사의 조사과정에서 이미 확인된바 있다(안병욱 2006, 6).

시켰다. 이에 보수 집단과 여론은 거세게 반발했다.<sup>12)</sup>

과거청산 작업은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은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제도화되었다. 그나마 국방부, 국정원, 경찰청은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으나, 정부로부터 독립된 사법부는 대법원장이 취임사에서 유감을 표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했다(한인섭 2007). 현 정부에 들어서 과거청산을 둘러싸고 발생한 갈등과 대립들은 국가 차원의 과거청산 작업과 피해자의 상흔 치유에서 보수 집단과 언론이 판정승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 3. 제도적 상흔 치유의 실효성과 한계

#### 1) 명예회복의 실효성

과거사의 진실 규명은 그 자체로 의의가 있지만, 명예회복과 피해 복원을 위한 후속 조치들을 통해 효과가 배가된다.<sup>13)</sup> 그래서 과거사 기구들은 국가폭력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피해 복원을 구체화한 사항들은 권고하거나 의무화할 것을 주장한다. 이와 같은 명예회복을 위한 권고 사항들이 그나마 반영된 것은 5·18이었고, 다음으로 제주4·3사건이었다.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한 권고 사항들은 부분적으로 실현되었다. 과거사 기구들의 권고 내용들은 법률 제정이나 법적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것에서 정부 인사의 추모행사 참석 및 사과문 발표 등과 같이 상징적 조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

12) 과거사 법률의 입법 과정과 이후의 논쟁에 대해서는 김성길(2006) 참조.

13) 명예회복에 보상과 기념사업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명예회복의 주안점은 사건의 성격을 재규정하는 것과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적 또는 신분적 피해를 복원시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 차원의 명예회복 조치들은 얼마나 현실화되었고, 지속적 효과를 갖는 것일까? 먼저, 명예회복 조치들이 얼마나 실행되었는가를 살펴보자. 과거사 기구들의 권고가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된 것은 민주화운동이었다. 그 내용을 보면, 피해 학생들에게 중단된 학업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복학을 허용하거나, 명예졸업장을 수여하는 것 등이다. 주로 큰 준비와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도 실행 가능한 것들이다. 민주화운동 관련 희생자를 추모하는 또는 사건을 기념하는 행사와 시설이 건립되기도 했는데, 이것은 국가의 권고를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활동들의 주체는 국가의 권고를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이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집단들이기 때문이다.

민간인 희생사건의 명예회복과 관련해서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명예회복은 언론에 규명된 진상을 발표하는 것, 진상조사 결정문을 보고서로 제작하는 것 등이다. 이 결정문에 관련 국가 기관들에 대한 권고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과거사 기구들은 권고를 할 뿐이고, 권고의 이행 여부와 수준은 해당 부처에서 결정한다. 정부는 권고사항들을 총괄조정하고 종합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진실위 권고사항 이해 처리단’을 2007년 8월 「대통령훈령」 195호에 의거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에서 이행한 권고는 78건 가운데 19건인 24.3%에 불과했다(연합뉴스 2008.8.20). 그나마 권고를 이행한 것들은 주로 인권침해와 관련된 사건들이었다.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해 국가가 사과한 것은 ‘나주 동박굴재 사건’과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뿐이었다. 이와 같은 실적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과거사에 대한 상흔 치유의 실행이 미미했음을 의미한다.

이명박 정부는 처리단을 행정안전부 제2차관실로 격하 이전시켰다. 그리고 2008년까지 단 한 건의 권고도 처리하지 않고, ‘정부 이행 기본계획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의 주요 골자는 국가의 사과 수준은 축소하고, 위령제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었다.<sup>14)</sup> 나머지 권고 사항들은 대

〈표 1〉 민간인 희생사건 관련 진상규명 결정문의 권고 사항

|                  | 제주 4·3사건  | 노근리사건   | 고양 금정굴사건   | 울산국민보도연맹사건  |
|------------------|---|---|--|---|
| 진상규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단매장지 및 유적 개발사업 지원</li> <li>• 추가 진상규명</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가 진상규명</li> <li>• 추가 피해신고</li> </ul>        |  |   |
| 명예회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사과</li> <li>• 추모기념일 지정</li> <li>• 진상보고서 교육 자료 활용</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적 정정</li> <li>• 잘못된 기록 수정과 자료 활용</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사과</li> <li>• 호적 정정</li> <li>역사교과서 수록</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사과</li> <li>• 호적 정정</li> </ul>                                |
| 배·보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족의 생계비 지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법 기준)보상</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호 사업</li> </ul>   |
| 추모<br>(기념)<br>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3평화공원 조성 정부 지원</li> <li>• 기념사업</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령사업</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양지역 역사관 건립</li> <li>• 평화공원 설립과 위령시설 설치</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희생현장 안내판 설치</li> <li>• 위령제 지원</li> </ul>                         |
| 재발방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과 역사교과서에 기술</li> <li>• 관련 법률 정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법률 조항 수정 요구</li> <li>• 경찰 인권 교육</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사기록 수정 및 등재</li> <li>• 평화인권교육 강화</li> <li>• 관련 법률 정비</li> </ul> |

\* 자료: 양조훈(2007);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2006);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2008)

부분 추후 검토 또는 논의 후 반영으로 분류했다. 급기야 현 정부는 국가의 사과를 관련 부처 인사가 추모행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가름하려 하고 있다(한겨레 2009.4.15). 과거사 상흔의 치유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과거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등이 참석했던 과거사 관련 기념식과 추모행사에서도 연쇄적으로 관철되고 있다.

14) ‘정부 이행 기본계획 조정안’은 2008년 5월 29일에 결정되었다. 경찰 관련 사건은 지역 경찰 서장이, 군 관련 사건은 국장급 공무원이 위령제에 참석하는 것으로 국가 사과를 대신한다는 것이다(한겨레 2008.9.8). 정부는 2009년부터 진실 규명이 이루어진 사건들에 한해 추모행사 개최에 대해 총 2억 6천만 원 내에서 하나의 사업 당 700만 원 이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과거사의 상흔 치유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들은 사실상 권위를 담보하지 못하고 있거나, 무시되고 있다. 그나마 권고가 수용되고 있는 사건들은 인권 침해와 관련 사건들인데, 사법부의 재심을 통해서만 효력이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각종 과거사 기구들의 판정이 제도적 효과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과거사 기구들의 결정들은 법원에서의 재심을 위한 근거를 만드는 행정 처분에 불과하다.<sup>15)</sup>

둘째, 명예회복이 이루어진 이후, 그 효과가 지속될 수 있는가이다. 근래에 침해한 집전을 벌이고 있는 제주4·3사건은 이를 잘 보여준다. 제주4·3사건의 명예회복은 일정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으나, 점점 위태로운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 제주4·3사건은 1999년 12월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제정된 이래 꾸준히 다양한 명예회복 관련 사업들이 이루어져왔다. 대통령의 공식 사과도 있었고, 국방부에서 발간한 책과 자료들에 제주4·3사건에 대한 정의와 내용을 수정하도록 했다. 그런데 최근의 상황들<sup>16)</sup>은 이러한 변화가 정권의 성격에 따라 급격히 선회할 수 있고, 회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조용하게 이루어진 과거청산'은 외부의 작은 충격도 견딜 수 없는 취약한 것이며, 제도화를 통한 상흔 치유 효과가 대중요법에 불과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제주4·3사건은 과거사를 쟁점으로 한 저항운동에서 사회통합 담론

15) 2007년 7월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이 행정처분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했다(법률신문 2007.8.16).

16) 국방부가 최근에 밝힌 제주4·3사건에 대한 평가는 "남로당의 사주를 받은 무장폭동"이다. 이 발언은 2008년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국방부장관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앞서 논란이 되었던 '교과서 개선 요구' 파문의 연속선상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제민일보 2008.10.7). 이러한 흐름의 연속선상에서 2009년 3월 『제주4·3사건 역사바로세우기 대책위원회』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으로 변해가던 흐름이 반전되어 다시 갈등하는 국면으로 전환될 것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조짐은 이미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진상 규명 등을 통해 제도권 내로 안착되면서 균열과 갈등이 표면화되던 제주4·3사건 관련 주체들이 다시 응집하고, 집단행동을 하면서 정부와 보수 집단의 공세를 방어할 대오를 갖추기 시작했다.<sup>17)</sup> 제주4·3사건뿐만 아니라 민주화운동, 민간인 희생사건 등 다양한 과거사들의 청산작업을 통해 도달한 성과들이 위협을 받거나 훼손되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 2) 배·보상의 경계선

과거사의 상흔 치유에 있어서 현실적 쟁점은 인적 피해에 대한 배·보상 여부와 규모이다. 국가 폭력의 피해자들이 과거청산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심을 가졌던 여러 요인들 가운데 피해 배·보상이 자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sup>18)</sup> 피해자들이 책임자 처벌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높은 관용적 태도를 보인 반면, 다른 청산 문제에 대해선 높은 관심을 보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런데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배·보상은 사건의 특성과 피해 유형에 따라 차별화되어 있다. 민주화운동으로 범주화할 수 있는 사건들과 삼청교육대 관련자들은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배·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인권 침해와 관련된 사건들은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배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에 민간인 희생사건들과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보상은

---

17) 2008년 10월 8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4·3왜곡 관련 규탄 쉼기대회'를 개최했다. 4·3 사건으로 쉼기대회가 개최된 것은 실로 오랜만이였다. 또한 2009년의 '4·3사건희생자 위령제' 이후에도 규탄대회가 열렸다.

18) 많은 피해자들이 자신들은 보상을 바라고 과거청산운동에 참여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피해 보상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진실 규명 이후 후속 조치로 피해 보상이나 이에 상당한 지원 프로그램이 실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표2) 주요 국가폭력 피해 사건에 대한 배·보상 현황

| 피해 유형       | 사건명        | 배·보상 추진 현황  | 관련 법규   |
|-------------|------------|---|---------|
| 민주화운동       | 5·18민주화운동  | 제6차 국가배상 추진 중   | 특별법 제정  |
|             | 민주화운동 일반   | 국가보상 추진 중   | 특별법 제정  |
| 인권 침해       | 인혁당 재건위사건  | 국가배상 완료   | 국가배상 소송 |
|             | 수지김사건      | 국가배상 완료   | 국가배상 소송 |
|             | 최종길사건      | 국가배상 완료   | 국가배상 소송 |
|             | 함주명사건      | 국가배상 완료   | 국가배상 소송 |
|             | 아람회사건      | 2007. 11. 11.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제기<br>(2000. 4. 26. 서울고등법원 재심 청구) | 국가배상 소송 |
|             | 조용수민족일보사건  | 형사보상금 지급 승소(서울중앙지법)                                       | 국가보상 소송 |
|             | 강희철 간첩조작사건 | 재심으로 무죄 판결. 보상금 지급  | 국가배상 소송 |
|             | 삼청교육대사건    | 국가보상 추진 중   | 특별법 제정  |
| 민간인<br>집단희생 | 노근리사건      | 생존 부상자에 한해 의료지원금 지급                                       | 특별법 제정  |
|             | 거창사건       | 국가배상 원고 패소(대법원)   | 국가배상 소송 |
|             | 울산도보연맹사건   | 국가배상 원고 승소(서울중앙지방법원)                                      | 국가배상 소송 |
|             | 문경석달마을사건   | 국가배상 원고 패소(서울중앙지방법원)                                      | 국가배상 소송 |

이루어진바 없다.<sup>19)</sup>

이처럼 피해 발생의 공통 원인을 국가폭력에서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인 희생사건들에 대한 배·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정치권과 사회의 인식은 거창사건에서 잘 드러난다. 거창사건의 진상은 사건이 발생한 해인 1951년에 일정 부분 공개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민간인 희생사건들과 달랐다. 거창사건은 유족회(원)의 주장처럼 희생자들을 ‘양민’으로 지칭하고 있어서 이태올로기 공방에서도 자유로웠다. 이와 같은 긍정적 환경에 기반 해 거창사건 유족회(원)들은 장기간에 걸친

19) 노근리사건 피해자 가운데 생존 부상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보상으로 보기 어렵다.

과거청산운동을 전개했다. 이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고, 참여자들은 과생적 피해를 입기도 했다(거창역사교사모임 2001). 거창사건은 여러 가지 질곡을 극복하고 마침내 민간인 희생사건으로는 처음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었다. 거창사건 피해자들은 이점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다른 민간인 희생사건들과 위상이 다름을 주장한다.<sup>20)</sup>

거창사건 유족들은 1988년 1월 24일 노태우 정부가 출범을 준비하면서 구성했던 「민주화합추진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피해 배상을 주장했다. 그러나 공포된 거창사건 특별법에는 배상이 제외되었다. 유족회는 차후에 특별법 개정을 통해 피해 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유족회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추모 사업이 착공되자, 다음 목표를 국가 배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유족회는 국가 배상을 현실적으로 가능한 국가 차원의 최종적 치유 방안으로 간주했다. 유족회는 국가 배상이 가능한 방법들, 즉 한편으로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특별법의 제·개정을 추진했다.

2001년 2월에 시작된 거창사건의 손해배상 소송은 2008년 6월 대법원의 판결로 종결되었다. 무려 7년 4개월이 소요된 이 재판에서 하급심에서는 승소 판결을 받기도 했으나, 대법원은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대법원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제시한 대안은 ‘기존의 특별법을 개정하거나 새로 제정하여 해결하라’는 것이었다.<sup>21)</sup> 그렇지만 특별법 제·개정을 통해 국

---

20) 김운섭(사)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 고문, 전 회장) 면접 조사 2008.8.8. 거창사건 관련자들의 이러한 인식은 산청·함양사건을 비롯해 함평사건 등 유사한 성격의 민간인 희생사건 관련 유족회(원)들에게 반감을 받는 주요 원인이다. 한편 거창사건 관련 유족회(원)들은 과거청산에 있어서 ‘무임승차’론을 토로하며, 선행하는 청산 작업에 대한 ‘발목잡기’라고 비판한다(한인섭 편 2003, 274-277).

21)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거창사건에 관한 국가의 후속조치는 국민 여론과 국가 재정, 유사사건의 처리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 정책적 판단에 근거하여 이뤄져야 하는 것”이어야 하며, “법원이 법리적인 문제점을 초월하여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조선일보 2008.6.5).

가 배상을 받으려는 계획은 2004년 3월에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된 바 있었고, 이후 수차례 특별법 제정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무산되었다.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의 공포를 정부가 거부한 가장 큰 이유는 첫째, ‘유사 사건들의 보상과 연쇄되어 국가 예산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 둘째, ‘거창사건 관련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었다(한겨레 2004.3.23). 이것은 국가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과거사의 상흔 치유를 파악했고, 사법부로 책임을 전가했음을 의미했다.

민간인 희생사건들뿐만 아니라 과거사의 제심과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장 논쟁점을 이루는 사안은 ‘공소시효’이다.<sup>22)</sup> 정부와 사법부는 거창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유족회는 1995년 12월 31일에 제정되었던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에관한특별법(법률 제 5028호)』 제3조에 근거하여 공소시효가 경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sup>23)</sup> 이 법률의 제정 배경은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해 12·12사건과 5·18 관련 가해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법리상으로는 이 특별법을 거창사건 등과 같은 민간인 희생사건들에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요구되었다.

민간인 희생사건 관련자들은 2008년에 개최한 한 행사<sup>24)</sup>에서는 국가 배상이 초미의 관심사임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같은 해 개최된 한 위령제에서도 피해 배상은 중요한 당면 과제로 대두되었다.<sup>25)</sup> 전자의 행사에서 박갑주 변호사는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배상소송이 쉽지 않다고 의견을

22) 과거청산과 ‘소멸시효’에 관한 법적 논쟁에 대해서는 한인섭 편(2007)을 참조.

23) 제3조의 조항은 다음과 같다. “형법 제250조의 죄로서 집단 살해 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9조 내지 제253조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4) 이 행사는 2008년 8월 13일 「진실규명결정 후속조치 대응 간담회」라는 제목으로 개최되었다.

25) 2008년 9월 27일에 개최된 ‘고양 금정굴 학살 희생자 위령제전’에서 이이화 범국민위원회 상임대표가 추도사에서 “유족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 문제 등”을 제기할 것임을 밝혔다.

〈표 3〉 민간인 희생 사건들의 국가 손해배상 청구 현황

| 사건명                     | 소송 추진 근거                 | 소송 진행 상태            |             | 소송 청구 내용   |   |
|-------------------------|--------------------------|---------------------|-------------|------------|---|
|                         |                          | 준비와 실행              | 소송자 결과      |            |   |
| 거창사건                    | 1951년 사건 직후의 재판기록과 조사보고서 | 2001년 2월 ~ 2008년 6월 | 대법원(제 3부)패소 | 유족 409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당 위로금 20만원</li> <li>• 총 8,189만 원의 위자료</li> <li>• 대법원 3부 패소 판결</li> </ul> |
| 함평사건                    | 지방의회 특위의 조사보고서           | 2002                | 중단          | 유족 118명    |   |
| 나주경찰 부대사건               | 진화위 진상규명 결정 이후           | 2008.3.13           | 진행          | 유족 140여 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9억여 원(희생자 1억 원, 배우자 및 자녀 2-3천만 원)</li> </ul>                              |
| 울산보도연맹사건 <sup>26)</sup> | 진화위 진상규명 결정 이후           | 2008 ~ 2009.2.10    | 서울지법 제1심 선고 | 유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억여 원 배상 판결</li> <li>• 항소심 진행 중</li> </ul>                               |
| 문경석달마을                  | 진화위 진상규명 결정 이후           | 2008~ 2009.2.11     | 서울지법 제1심 선고 | 508명 유족 4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패소 판결</li> </ul>   |

제시했다. 문제는 범리상의 적합성을 따지고 설득하는 것으로 배·보상 요구가 중단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그 이상의 어려움도 극복했던 경험을 갖고 있다. 이들은 진상 규명이 진정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상징적 보상이라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고 있다. 또한 민간인의 희생에 대한 국가 배상은 법률의 논리 보다 정치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

거창사건의 판결에서 공소시효가 핵심 쟁점이 되었고, 대법원의 판결이 다른 유사 사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지만 거창사건의 재판 결과가 다른 민간인 희생사건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26) 울산지역보도연맹희생자유족회는 2007년 11월 29일 성명을 내고, “피해보상 없는 사과, 피해보상 없는 명예회복은 인정 못한다”며 정부의 조속한 피해보상을 촉구했다(뉴시스 2007.11.30).

있는가는 또 다른 판단을 필요로 한다. <표 3>이 보여주듯이, 거창사건의 최종 판결 이전에 몇몇 민간인 희생사건들이 손해배상 소송에 착수했다. 최근의 결과는 울산보도연맹사건의 경우는 승소한 반면, 문경석달마을 사건은 패소했다. 이처럼 상반된 재판 결과가 나온 이유는 사건의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소시효’의 소멸 기점을 언제로 정할 것인가에 있었다.

민간인 희생사건들만 아니라,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로 범주화되는 사건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근거는 거의 공통된다. 이들은 5·18 민주화 운동, 삼청교육대 사건 그리고 각종 인권 침해와 관련해 손해 배상에서 승소한 사건들을 긍정적 선행 사례들로 언급한다(이창호 2003; 한인섭 편 2003, 262-263).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오늘날 달리 적용되고 있는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 보상의 경계선을 해체시키고자 하며, 공통 기반 위에 있음을 부각시킨다. 그러나 민간인 희생사건들은 보다 밀접한 사건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근래에 들어서는 보상을 포기한 민간인 희생사건도 생겨났다. 함평사건이 그 예이다. 함평사건 유족들은 손해배상을 준비하다가 공소시효 경과 등의 문제에 직면하자, 국가 차원의 상흔 치유 방법을 명예회복과 위령사업에 국한하되 신속하게 추진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sup>27)</sup>

이와 같이 현재의 과거사 관련 국가 배·보상 논쟁은 피해의 발생 유형에 따라 구별되어 있고, 동일한 피해 유형일지라도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이러한 현상들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고, 국가가 주체가 된 과거청산을 통한 상흔 치유의 의미와 신뢰

27) 함평사건은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했으나, 유족회 관련자에 대한 면접조사에서 “유족회 차원의 손해 배상은 하지 않기로 했으며, 개인 보상 소송에 대해 유족회가 지원하지 않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했다(전 함평사건유족회 회장 면접조사 2008.10.2). 이때만 해도 유족회는 손해 배상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자신들의 요구는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만을 분명히 했다.

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사법부가 과거사의 상흔 치유의 방법에 있어서 '반인권적 국가 범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는 한 앞으로 도 혼란은 계속될 것이다. 반면 사법부가 하나의 입장을 취하면 또 다른 정치·사회적 논쟁이 벌어질 것이 불 보듯 하다. 그러므로 이 배·보상 문제의 해결책은 사법부가 아니라, 정부가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4. 과거사의 상흔 치유에 대한 사회의 반향: 침묵과 카타르시스(catharsis)

과거사의 상흔 치유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심과 시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모색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과거사의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이 진정으로 가능하며, 피해자의 고통이 해소되고 사회적 관계가 복원될 수 있다. 사회적 파장이 가장 큰 방법은 가해자의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는 법적인 방법과 비법적인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후자의 방법은 윤리적·인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고, 잘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효과를 가늠하기 어렵다.

반면 사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사회구성원들의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반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문제는 여기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투사될 개연성이 있고, 진실 공방과 역사 평가 등으로 심화된 사회적 대립 구조를 양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해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확고부동한 증거를 확보하고, 다양한 상황 맥락과 인과관계를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불행하게도 한국의 과거청산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매우 취약하다. 그리하여 5·18의 책임자 처벌과 친

일반민족 행위자 재산 환수를 제외하고는 가해자의 책임을 묻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한국의 과거청산 작업은 사실 대단히 안전하게 진행되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하는 것이다(한홍구 2008).

과거사의 상흔이 국가폭력에 기인한다는 것은 곧 국가가 직·간접적 가해자이거나 관련자임을 의미한다. 국가의 책임을 논하는 것은 피해의 발생 원인이 사인 간의 원인과 분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에서 발생한 것임을 지적한다. 그러므로 국가폭력에 의한 상흔의 치유에 대해 현재의 국가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고, 시민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수반된 지지가 필수적이다. 이것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과거사의 상흔 치유는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 예방이라는 또 하나의 궁극적인 목표를 성취할 수 없다. 이것은 과거청산이 아니라, 과거를 망각하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단절하는 것이다.

그런데 상흔의 제도적 치유 주체인 국가는 과거가 아닌 현재의 국가이며, 실질적인 치유 주체인 사회구성원들은 현재를 그리고 미래를 살아갈 사람들이다. 따라서 과거사의 상흔 치유에서 중요한 점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이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와 사회구성원들의 가슴 속에 맺힌 ‘울혈’을 풀어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sup>28)</sup> 즉 과거사로 인해 막힌 흐름과 차단되고 굴절된 지점들을 규명하여 소통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과거사의 상흔 치유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태도는 카타르시스와 거리가 멀다. 과거청산 전반에 관해 보수 집단과 여론의 반발력

---

28) 세계의 여러 과거청산 작업들은 피해자가 발언과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강력한 카타르시스의 효과를 보여주었다고 한다(Hayner 2008, 247). 그러나 한국의 과거청산 작업은 증언의 기회를 그리고 이들의 목소리를 자료화하는 사업을 하지 않았다. 반면 ‘수지 김 사건’은 피해자가 익명화되지 않고 사회에 노출됨으로 인해 심각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하겠다(양현아 2007).

이 점점 거세어지고 있고, 진상규명이 이루어진 사건들에 대해 또다시 반공과 안보 그리고 법률적 위상의 위배라는 잣대를 들어 무화시키려 하고 있다.<sup>29)</sup> 다수의 사회구성원들은 왜 과거사의 상흔을 치유해야 하는지, 이것이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변화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지 않다. 사회구성원이 느끼기에 현재의 과거청산은 피해자의 원한 해소의 문제로 축소되어 있고, 명예회복 및 보상 조치들이 사회구성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지 못한다. 즉 국가 차원의 과거청산 효과가 시민사회로 융화되지 않고 있고, 상흔 치유를 함께 할 사회적 기반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

허시(H. Hirsch)는 과거청산에서 “침묵은 기억의 파괴”라고 말한다(Hirsch 2009, 257). 실제로 과거청산은 조용하게 진행되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의 시민사회는 침묵하고 있고, 정부와 보수집단의 목소리만 드높다. 이는 과거사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시민사회와 단절되어 진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민사회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과거사의 상흔 치유는 실효성에 있어서 의문을 갖게 하며, 필요성에서도 가치절하를 가져올 것이다.<sup>30)</sup> 시민사회의 침묵은 새로운 진실에 대한 자연스러운 수용과 승인을 의미할 수도 있으나, 이것은 개연성이 낮다.

과거청산의 또 다른 효과인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라는 측면에서도

29) 2006년에 「동아일보」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부정적이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다. ①위원회와 법원의 판결이 동일한 위상을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전과 기록 삭제의 문제에 있어 위원적 발상을 하는 등 법률 비전문가들에 의한 인민재판을 하고 있다는 것, ②임박한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독재’를 이산화하려 한다는 것, ③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나 거창사건 및 제주4·3사건 등에서도 이 전례를 따르려 할 것이라는 것이다(동아일보 2006.9.13).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는 법률의 개정을 통해 그간의 심의 결과를 반복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와중에서 ‘전여옥 의원 사건’이 발생했다.

30) 과거청산 작업은 사회적 쟁점을 만들고, 대중의 관심을 유도해야 한다. 홍석률은 “여론과 정치적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는 방향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를 의식해서 너무 조용히 있으면 대중적 관심과 호응으로부터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음”을 지적했다(홍석률 2007, 189-190).



침묵은 긍정적 반향으로 볼 수 없다. 과거청산의 대상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관심 환기와 새로 밝혀진 진실에 대한 충분한 조명과 성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가폭력에 의한 상흔은 재연될 것이다.<sup>31)</sup> 그러므로 과거청산을 쟁점으로 사회적 논쟁과 갈등이 벌어지는 등 다양한 입장들이 논쟁과 각축을 벌이는 것은 건강한 것이며, 본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사의 상흔 치유에 대한 사회의 침묵은 어쩌면 이를 둘러싼 제 세력들의 이해가 암묵적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지도 모른다. 과거청산에 긍정적이었던 정부와 정치세력도 이를 둘러싼 논쟁의 과열로 다른 국가 정책들의 집행이 영향을 받을 것을 고민했고, 과거사위원회들은 불필요한 논쟁들에 대응함으로써 본연의 과제를 수행하지 못할 것을 우려했다. 피해자들은 정치·사회적 논쟁과 관심이 신속한 진상규명과 판정을 방해하고 유보하는 원인으로 작용할까봐 노심초사했다. 보수 진영은 과거청산의 사회적 파급이 예상보다 크지 않고 언제든지 제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필요 이상의 논쟁은 오히려 과거청산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보수 진영은 정부가 바뀌자 과거사의 상흔 치유를 위한 작업 일체를 이데올로기적 공격의 목표로 삼고 정치 도구화해 난타를 가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별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다.

## 5. 맺음말

2009년! 한국에서 과거청산은 낯선 얘기가 아니다. 과거청산이라는

---

31) 김무용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중요성은 어쩌면 진실의 발견보다는 진실의 사회적 인정에 있다”고 한다(김무용 2006, 56).

용어는 근래에 사용되었을지라도, 해방 이후 과거청산은 계속되고 있었다. 과거청산은 현재와 단절된 과거사를 청소하거나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회관계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았고, 타협 혹은 변형되어왔다. 오늘날 한국에서의 과거청산의 전환점을 이룬 5·18 모델의 산파는 5·18의 가해자가 집권하고 있던 정당이었다. 만일 이때 5·18의 청산작업에 피해자와 민중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었다면, 21세기 한국 사회는 크게 바뀌었을 것이다. 과거청산의 궁극적 목적은 피해자의 치유와 더불어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는 데 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가 처한 현실을 보면, 적지 않은 시간과 인력이 투입된 과거청산 작업의 성과와 기대 효과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 어려운 점들이 다수이다. 과거사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졌건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불안해 하고 자신의 고통을 공개해 획득한 성과를 회의하고 있다. 게다가 이제 가해자들은 과거청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생을 마감할 수 있게 되었다. 명예회복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효과가 사회 속에 배태되었음을 발견하기 어렵고, 중요한 사안들은 사법부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 등 고난의 연속이다. 지배체제와 국가 기구들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명예회복 조치들은 방기되거나 무시되었다. 배·보상의 경계선은 민주화운동 및 인권 침해사건과 민간인 희생사건 사이에서 요지부동이다. 피해자들에 대한 집단적 상흔 치유라고 할 수 있는 기념사업 혹은 추모사업은 배·보상의 경계선을 넘어섰으나, 구태의연한 틀을 벗어나지 못해 험난하며 갈 길이 멀기만 하다.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들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니, 과거사로 인한 피해자들과 시민들의 트라우마 치유는 요원하기만 하다.

이와 같이 과거사의 상흔 치유가 무력화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퇴보하는 것은 5·18 모델을 넘어서는 새로운 모델의 창출에 일정 부분 실패하고 대안을 생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가 주체가 된 제도적 청산작업에 많은 것을 위탁하고 기대하면서 방관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상황적 맥락이 있었기는 하지만, 상흔 치유에 필수적이었던 과제들을 너

무 쉽게 용서 및 화해와 교환한 것 아닌가도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sup>32)</sup> 이 점은 진실을 매개로 화해가 이루어진 사례가 과연 몇이나 되며, 화해를 위한 조건과 자리가 형성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면 분명해진다. 현재까지의 상황들은 진실을 매개로 화해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얼마나 소박한 것인가를 입증해줄 따름이다.

라카프라(D. LaCapra)는 “가공할 사건과 그 후유증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애도만으로는 사회 정치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LaCapra 2008, 432). 릭비(A. Rigby)는 더 구체적으로 “만일 역사의 희생자들에 대해 그들이 상실한 것들을 완전히 회복해주는 일이 불가능하다면, 그들이 과거의 불의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물질적이며 상징적인 배상과 보상을 적절히 해주는 것이 남아 있는 우리들의 책임이다”고 말한다(Rigby 2007, 13). 국가주체의 과거청산 작업이 이러한 문제의식에 적절한 해답을 줄 수 없다면, 과거사의 상흔 치유는 시민사회의 과제로만 남게 된다.

사실 과거사 기구들의 본연의 임무는 상흔 치유가 아니다(Hayner 2008, 247). 과거사의 상흔 치유를 위한 실질적인 처방과 처지는 시민사회에서 창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과거사 관련 피해자들이 연대하는 것이다. 그간의 과정을 되돌아보면, 과거사 피해자들은 분열되어 각각 자신의 고통만을 주장하고, 각개전투로 해결 방안들을 찾았다. 유사한 과거사로 분류되는 사건들도 상호 연대에 무심하고, 반목하고 적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과거사의 피해자들은 이데올로기와 국가폭력 및 사회구조의 피해자라는 공통 기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데는 취약했다. 이 점에서 볼 때, 2008년 4

---

32) 다른 나라들에서도 화해의 내용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있었다(Hayner 2008, 273-294). 화해가 어려운 이유는 '사회 전체의 관심과 의지 그리고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 사회가 형성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월 국가폭력 피해자와 유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애환을 공유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된다.<sup>33)</sup>

둘째, 과거사의 상흔을 시민사회에서 함께 치유할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고민을 하고, 실천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시민사회가 주체가 되는 또 다른 차원의 제도화가 필요하며, 이것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비판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화는 앞서 이루어진 과거사들이 교훈으로 보여주듯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충분히 성찰하면서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비록 시민사회가 주체가 되어 과거사의 치유를 위한 제도를 태동시킨다고 해도, 국가화되거나 관료화될 개연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사의 상흔이 현재의 사회문제 및 사회운동과 접맥되어 있음을 명시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김영수 2008, 110). 과거사의 상흔 치유가 현재와 미래를 사는 시민들의 고통, 국가폭력 및 인권 유린에 대해 함께 대처하지 못한다면, 이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추진력은 즉각 소멸하고 말 것이다. 이것은 과거청산이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과 직결된 문제임을 피해자들과 시민사회 모두가 인식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 그 위에서 상흔 치유가 이루어져야 함을 뜻한다. ~~이~~

---

33) 5·18의 한 단체인 '오월어머니회'의 주관으로 이루어진 이 행사에는 제주4·3사건과 여순사건 유족이 함께 했다(연합뉴스 2008.4.14). 이 행사는 민주화운동과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이 공통 기반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추모제에서는 종종 다른 사건들의 유족들이 참석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추모제가 아닌 모임을 갖기는 거의 처음이었다.

## 참고문헌

- 거창사건관리사업소. 2005. 『거창사건추모공원조성사업자료집』.
- 거창역사교사모임. 2001. 『거창사건을 말한다』. 거창민간인학살희생자추모 평화인권제위원회.
- 권귀숙. 2006. 『기억의 정치—대량학살의 사회적 기억과 역사적 진실』. 문학과 지성사.
- 김동춘. 2005. “한국 과거청산의 성격과 방향.”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제8호. 한울. 19-45.
- 김무용. 2006. “진실화해위원회, 과거청산운동의 제도화와 국민통합주의 노선.” 『4·3과 역사』 제6호. 각. 129-158.
- 김성길. 2006. “과거사법 제정과정과 그 문제점.” 『과거사 진상 규명』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역사연구회 특별토론회 자료집. 한국역사연구회.
- 김영수. 2008. 『과거사 청산, ‘민주화’ 를 넘어 ‘사회화’ 로』. 메이데이.
-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 2006.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보고서』.
- 변주나·박원순. 2000. 『치유되지 않은 5월』. 다해.
- 안병욱. 2006. “과거청산과 진실규명.” 『과거사 진상규명』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역사연구회 특별토론회 자료집. 한국역사연구회.
- 안병직 외. 2005. 『세계의 과거사 청산』. 푸른역사.
- 양조훈. 2007. “제주4·3위원회 활동평가와 과제.” 『과거사정리 활동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 자료집』.
- 양현아. 2007. “‘수지 김’ 사건 유족들의 피해 성격과 그 함의.” 『재심·시효·인권』. 경인문화사. 93-158.
- 이영재. 2004. “과거청산과 민주주의: 5·18 사법적 처리의 의의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제4권 2호. 5·18연구소. 241-268.
- 이용우. 2009. 『프랑스의 과거사 청산』. 역사비평사.

- 이창호. 2003. “산청·함양·거창 민간인학살사건의 법적 재검토.” 『민주법학』 제26호.
- 정근식. 2002. “과거청산의 역사사회학을 위하여.” 『사회와 역사』 제61호. 문학과 지성사. 11-52.
- 정해구·김태일. 2007. “비제도적 운동정치 연구 서설.” 『한국정치와 비제도적 운동정치』. 한울. 15-34.
- 조희연. 2005. “한국에서의 과거청산의 전개과정에 대한 정치사회학적 분석.” 『과거청산운동 백서 1부: 진실과 정의의 회복을 위하여』. 한국학술정보(주). 62-95.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8. 『2007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 최정기. 2006. “과거청산에서의 기억 전쟁과 이행기 정의의 난점들.” 『지역사학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지역사학회. 3-21.
- 한인섭 편. 2003. 『거창사건 관련법의 합리적 개정방안』.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_\_\_\_\_. 2007. 『재심·시효·인권』. 경인문화사.
- 한인섭. 2007. “재판을 통한 사법부의 과거청산.” 『재심·시효·인권』. 경인문화사. 1-65.
- 한홍구. 2008. “이명박 시대의 과거청산과 역사논쟁.” 『역사와 현실』 제69호. 역사비평사. 3-15.
- \_\_\_\_\_. 2009. “과거청산과 국가폭력, 시민저항.” 『아시아 저널』 창간 준비1호. 5·18기념재단. 21-44.
- 홍석률. 2007. “과거사관련 위원회 활동 현황과 과제.” 『과거사정리 활동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 자료집』. 군의문사진상구명위원회 외.
- Hayner, Priscilla B. 2002. *Unspeakable Truths*. Routledge. 주혜경 역. 2008. 『국가폭력과 세계의 진실위원회』. 역사비평사.
- Rombouts, Heidy. 2002. “Impotence and Difficulties of Victim-Based Research in Post-Conflict Societies.” *European Journal of Crime, Criminal Law*

*and Criminal Justice*, Vol. 10/2-3. Kluwer Law International.

Hirsch, Herber. 1995. *Genocide and the Politics of Memory: Studying Death to*

*Preserve Lif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강성현 역. 2009. 『제노

사이드와 기억의 정치: 삶을 위한 죽음의 연구』. 책세상.

LaCapra, Dominick. 육영수 엮음. 2008. 『치유의 역사학으로』. 푸른역사.

Rigby, Andrew. 2001. *Justice and Reconciliation*. Lynne Rienner Publishers. 장원

석 역. 2007. 『과거사 청산의 비교 정치학』. 온누리.

투고: 2009.3.31 심사: 2009.4.2 확정: 2009.4.30